

문경제일병원 생활지원장학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간호학과를 졸업 후 문경제일병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간호학과 재학생에 대하여 생활지원장학금(이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장학생의 선발 등 필요한 제반 규정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1.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생활지원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금액의 결정, 장학생의 선정,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등, 장학금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장은 문경제일병원장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6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3조(장학금의 내용과 성격)

1. 장학금은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월 지급되며, 3학년의 경우는 총 24개월, 4학년의 경우는 총 12개월을 지급한다.
2.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과 동시에 문경제일병원에 입사하여 수혜한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근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1.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 장학금의 취지와 성격을 이해하고 그 세부 조건에 동의하는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지급액의 규모와 장학생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내용은 해당 대학교를 통하여 2학기 중에 공고하여 선발을 확정하도록 한다.
3.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와 서약서, 그리고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반환)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졸업과 동시에 문경제일병원에 입사할 수 없거나, 근무 중에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납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반납액의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간호사 국가고시에 불합격한 때에는, 차기년도 국가고시 합격 후 입사하여 의무근무를 원할 경우 1년간 반환을 유예 및 면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유예 불허 결정이 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재학 중 변심으로 인하여 장학금수령을 중단을 원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